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07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김현정·박정현·전재수

박홍배 · 황명선 · 신영대

이학영 · 이개호 · 박 정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부당한 명령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경우, 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의무) ① 상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 3. 명백히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내용으로 하는 명령
- 4. 임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상 판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2조의2(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의무) ① 상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명령을 한 때
	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
	용으로 하는 명령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3. 명백히 임무에 위배되는 행
	위 내용으로 하는 명령
	4. 임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사
	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
	<u>백한 명령</u>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는 이
	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기
	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
	<u>다.</u>